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904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개요	1
II. 총괄적 검토	3
1. 제정안의 입법배경	3
2.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5
3. 총괄 검토의견	9
4.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2
III. 주요 내용별 검토	14
1. 목적 및 정의규정	14
2.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16
3. 진상규명 신청 및 조사방법 등	19
4.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등	24
5.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28
6.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및 권리보호	32
7. 피해자 지원시설, 기부금품 및 기념사업 등	35
8. 비밀준수의무 및 벌칙	39

I. 개요

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690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44인

(2) 제 안 일 : 2024. 12. 24.

(3) 회 부 일 : 2026. 7. 31.

나. 제안이유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부산 덕성원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을 당한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 2)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3조).

- 3)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11조).
- 4)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증거보전의 특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5)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6조).
- 6)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
-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II.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입법 배경

□ 덕성원은 1953년 설립되어 2000년까지 부산지역에서 운영된 아동 보호시설로서, 부산시는 공문을 통하여 아동의 수용 및 전원을 지시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시설을 지도·감독하였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 1명과 미신청 피해자 45명 등 총 46명을 조사한 후, 2024년 10월 8일 이들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음.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진실규명 대상자들은 경찰의 단속과 부산시의 전원 조치 등을 통하여 덕성원에 수용된 후 농장·공사현장 및 관련 시설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되었고, 구타·가혹행위·감금·성폭력, 열악한 생활환경 및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침해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국가와 부산시는 덕성원에 아동 수용·보호를 지시하고 재정을 지원하였음에도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인권침해를 묵인·방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하여 덕성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관리·감독 소홀에 관한 공식 사과, 피해자 전수조사 및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제정안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지속적인 진상규명과 피해자·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의 지급, 피해자 주거·

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기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생활안정 및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제정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 제정안은 총 6장, 4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총칙)은 이 법의 목적을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통한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에 두고(안 제1조),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피해자 및 유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2조).
- 제2장(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소위원회 설치(안 제5조), 회의 운영(안 제6조), 사무국 설치(안 제7조)를 규정하고 있음.
- 제3장(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은 피해자, 유족, 친족관계인 또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상규명 신청과 그 기간을 정하고(안 제8조 및 제9조), 신청의 각하결정 및 직권을 포함한 조사개시 결정(안 제10조 및 제11조), 조사방법(안 제12조), 동행명령(안 제13조), 증거보전의 특례(안 제14조), 청문회(안 제15조), 진상규명기간 및 그 연장(안 제16조),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안 제17조 및 제18조), 결정통지와 이의신청(안 제19조), 결과보고서 작성(안 제20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 의무(안 제21조)를 규정하고 있음.
- 제4장(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조치)은 국가의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안 제22조), 피

해의 정도 등을 고려한 보상금 지급(안 제23조), 상이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안 제24조), 소득활동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안 제25조),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절차(안 제26조), 지급 여부 및 금액의 심의·결정(안 제27조), 결정서 송달(안 제28조), 재심의(안 제29조), 신청인의 동의와 지급청구(안 제30조), 보상금등 수급권의 보호(안 제31조), 조세면제(안 제32조), 환수(안 제33조), 시효(안 제34조), 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의 설치(안 제35조), 기부금품의 접수(안 제36조), 기념사업(안 제37조), 불이익 금지(안 제38조)를 규정하고 있음.

□ 제5장(보칙)은 위원회의 위원·직원·감정인·전문가 등에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안 제39조).

□ 제6장(벌칙)은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안 제40조), 거짓진술, 거짓 자료 제출, 거짓 답변, 실지조사 거부·기피, 동행명령 불응, 불이익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41조).

<제정안의 조문 구성>

장 구성	조문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장 부산덕성원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제3조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소위원회
	제6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	사무국의 설치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8조	진상규명의 신청
	제9조	신청의 방식
	제10조	신청의 각하결정
	제11조	진상규명 조사개시
	제12조	진상규명 조사방법

장 구성	조문	주요 내용
	제13조	동행명령
	제14조	증거보전의 특례
	제15조	청문회
	제16조	진상규명기간
	제17조	진상규명결정
	제18조	진상규명불능결정
	제19조	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제20조	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
	제21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제4장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조치	제22조	피해자 명예회복
	제23조	보상금
	제24조	의료지원금
	제25조	생활지원금
	제26조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제27조	심의와 결정
	제28조	결정서 송달
	제29조	재심의
	제30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31조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제32조	조세면제
	제33조	보상금등의 환수
	제34조	시효
	제35조	부산 덕성원 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제36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37조	기념사업
	제38조	불이익 금지 등
제5장 보칙	제39조	비밀준수 의무
제6장 벌칙	제40조	벌칙
	제41조	과태료

□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에 기초한 피해자·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있음.

□ 우선, 제정안은 부산 덕성원에 수용된 사람들이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사건을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으로 규정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힘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생활안정, 인권신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다음으로,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유족 등의 신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에 따라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관계자 진술 청취, 실지조사, 청문회 등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진상규명결정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제정안은 국가가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그 유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한 보상금과 상이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소득 활동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보상금등의 지급을 위한 신청·심의·결정 절차를 마련하고, 부정수급이 있는 경우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를 위한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념관 건립,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위령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추모와 명예회복, 사건의 역사적 기억 및 인권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자유롭게 발언한 사람 및 위원회의 피해자 결정이나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피해자·유족에 대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원회 관계자 등의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3. 총괄 검토의견

-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실시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금등의 지급, 주거·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기념사업의 추진 등을 통해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24년 10월 8일 덕성원 피해자 46명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고,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특별법 제정 등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회복·지원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제정안은 이러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도 입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은 그 자체로 보상금 지급의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또는 유족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진실규명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상 보상 절차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피해자 지원 및 보상 절차와 별도로 제정안이 독자적인 진상규명기구와 조사절차를 두는 것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진상규명 절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정 절차와 대상 및 기능 면에서 중복될 우려가 있음.

더욱이 두 절차가 병행될 경우, 조사 범위·사실인정 등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이 경우 진실규명 또는 피해자 결정의 효력, 보상 대상의 확정 및 지원절차의 적용 등을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정안의 진상규명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전제로 별도의 보상·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과거사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지원입법의 방식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집단수용시설 등 과거사 사건 관련 법률안 7건 중 3건은 덕성원 사건 등 특정 개별사건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정안인 반면, 나머지 4건은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피해자를 포괄하여 지원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임.

<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유사 제정법률안 >

구분	의안번호	제명	발의자
집단수용 시설등 일괄	14008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17719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17984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20220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미애의원 등 18인
개별사건	6904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44인
	6944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재강·용혜인·이성권의원 등 23인
	11420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2인

개별 사안별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은 유사한 성격의 시설 인권침해 피해 중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다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피해 인정, 보상금등의 산정, 신청·심의·결정 및 불복절차 등이 사건별 법률에 따라 달라질 경우 제도 운영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덕성원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되,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절차와의 관계를 정비하는 한편, 유사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포괄하여 일관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통합적 입법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과거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관련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함. 다만, 인권침해 사건이 타 유사 시설에서도 발생한 점, 동일인의 다 시설 수용 사례(소위 ‘회전문 입소’), 3기 진화위의 추가 진실규명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집단수용시설 전체를 포괄하는 법률 제정이 바람직함.

또한, 진상규명 관련 조항은 「과거사정리법」 개정('26.2.26. 시행)에 따라 3기 진화위가 출범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진실규명 업무는 일관성 있는 조사결과를 도출하고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진화위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동 법률안은 그간 진화위가 진실규명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함.

진상규명 관련 규정은 향후 진화위 활동 상황(활동기간 3년, 2년 연장 가능),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및 수집 목적 외 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9조 및 제71조에서 이미 금지(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하고 있음.

제정안의 벌칙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 수위에 비해 현저히

낮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적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39조의 비밀준수의 의무와 관련하여
비밀 중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 내용별 검토

1. 목적 및 정의규정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통하여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안 제1조),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피해자 및 유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안 제2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이란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부산 덕성원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을 당하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인하여 사망, 행방불명, 상이, 정신적 장애 등에 이르게 된 사건을 말한다.
2. “피해자”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속·비속으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를 말한다.

나. 검토의견

- 먼저 제1조와 관련하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도 진상규명과 명

예회복 또는 피해자 지원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¹⁾.

□ 안 제2조제2호는 “피해자”와 “유족”을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안 제8조²⁾에서는 위원회가 인정한 공식 피해자 및 유족이 아닌 일반적 의미의 피해자와 유족으로 사용되고 있어, 다른 개별 과거사법률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아닌 희생자 등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³⁾.

□ 한편 안 제2조제3호의 유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을 우선하고, 이들이 없는 경우에만 형제자매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유족의 범위를 일정한 친족순위에 따라 정하는 방식 자체는 입법례상 가능함. 다만 덕성원 사건의 경우 장기간 수용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 등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정안과 같은 한정적 범위가 실제 구제 필요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유사 입법례와 사건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⁴⁾.

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제주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인권진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규정 및 제3조(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에 따르면 신청 및 진상조사를 거쳐 피해자 및 유족이 결정되는데, 제8조제1항은 피해자나 유족 등이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각 조항이 논리상으로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다른 과거사법도 피해자나 유족이 진상규명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은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를 넘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2.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두고(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부산 덕성원 피해자 대표를 포함한 인권 및 복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4조).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음(안 제7조).

제2장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제3조(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설치) ①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3.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4. 제23조에 따른 보상금, 제24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제25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장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부산 덕성원 피해자 대표를 포함한 인권 및 복지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등 위원회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4조제2항은 위원을 “관계 공무원 및 부산 덕성원 피해자 대표를 포함한”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 대표의 참여를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및 관련 사항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과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피해자

대표 외에 법률·인권·복지·의료·조사 분야 전문가의 구성 비율이나 추천 방식 등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⁵⁾.

- 또한 안 제6조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를 해당 위원장이 주재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입법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제정안은 다소 이례적인 측면이 있음.

제정안과 같은 문언은 의결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와 같이 규정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관계 공무원의 직위와 각 배경 집단별 인원 등을 구체화하고 있음.

제3조(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법제처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2. 국회가 추천하는 4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3. 유족 대표
4. 그 밖에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3. 진상규명 신청 및 조사방법 등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피해자·유족·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진상규명 신청권을 부여하고 그 신청기간과 방식 등을 정하고 있으며(안 제8조 및 제9조),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명백히 거짓 또는 이유 없는 신청 등에 대한 각 하결정을 규정하고 있음(안 제10조).

이어서 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사개시결정과 직권조사개시결정을 규정하고(안 제11조),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요구와 진술청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사실조회, 감정, 실지조사, 동행명령, 증거보전의 특례, 청문회 등 위원회의 구체적 조사방법과 권한을 정하고 있음(안 제12~제15조).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8조(진상규명의 신청) ①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신청의 방식) ① 제8조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청의 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진상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상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제11조(진상규명 조사개시)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진상규명 조사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신청인, 피해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자료의 영치

4. 관계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 의뢰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사전에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진상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관계 기관·시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설 또는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등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로부터 실지조사 또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기관등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또는 제112조에 해당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청문회의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은 이를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에게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제14조(증거보전의 특례) 위원회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의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청문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 증인, 감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제4조제2항·제3항,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한다. 이 경우 “국회”는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로, “안전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으로, “본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해당위원회”는 “위원회”로, “의장 또는 위원장” 및 “의장”은 “위원장”으로, “국회규칙”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각각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10조와 제11조의 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10조제1항은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가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11조제1항은 안 제10조제1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사개시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각하사유가 있는 신청에 대하여 각하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조사개시 여부가 불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각하사유의 성격을 고려하여 “각하한다”로 규정하거나, 각하재량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후속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2조의 조사권한은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부산덕성원 사건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고 관련 기관·시설·단체에 자료가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료수집 및 실지조사의 근거를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임.

그러나 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출요구”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출명령”을 받은 기관등의 제출거부를 제한하고 있어 두 개념의 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함.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위원회가 별도의 의결이나 절차를 거쳐 제출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출요구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안 제14조의 증거보전 특례는 위원회가 직접 압수·수색 등 강제 처분을 하는 대신 검사에게 그 청구를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와 수사기관의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증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증거보전의 실제 청구 및 법원의 처분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게 되므로, 제정안의 규정은 그 제도적 연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4.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 등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 기간을 최초 조사개시결정일부터 2년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16조), 조사결과에 따라 진상규명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17조 및 제18조). 또한 각종 결정의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 결과보고서 작성,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와 업무의 위임·공동수행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6조(진상규명기간)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진상규명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국무총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상규명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써 진상규명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제17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18조(진상규명불능결정)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결과 진상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진상규명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9조(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1조에 따른 조사개시결정, 제17조에 따른 진상규명결정, 제18조에 따른 진상규명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피해자, 제8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인과 제12조에 따른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진상규명 결과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진상규명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조사결과에 따라 진상규명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을 하도록 하여, 조사 결과가 불명확한 상태로 남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특히 장기간 경과한 과거사 사건의 경우 관련 기록의 멸실, 관계인의 사망 또는 기억의 약화 등으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상규명불능결정 및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신청인에게 조사결과와 한계를 알리고 향후 자료가 발견될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다만, 진상규명불능결정 이후 새로운 중요 자료가 발견된 경우 재조사 또는 재심의를 가능한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 안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가 각하된 동일 사실에 관한 재신청의 경우 새로운 중대한 소명자료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상규명불능결정에 대해서도 새로운 중요 증거가 제출된 경우 재조사를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9조의 통지 및 이의신청 절차는 위원회의 조사·결정 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각하결정뿐 아니라 조사개시결정,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조사대상과 조사결과에 관한 오류를 위원회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의미가 있음.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통지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소재불명인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 제2조제3호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에게도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범위와 통지대상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21조제1항의 관계기관 협조의무는 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기록·자료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설 운영주체 및 관련 단체 등에 보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특히 부산덕성원 사건의 진상규명에는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부

산광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 의무를 명시한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안 제21조제2항은 위원회가 업무 일부를 관계기관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수임기관, 위원회의 지휘·감독 및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피해자·유족 여부의 심의·결정, 진상규명결정 및 보상금등 지급결정과 같이 위원회의 독립적인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까지 위임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위임·공동수행이 가능한 업무를 신청 접수, 사실조사 지원, 자료수집 또는 시설·기념사업의 집행 등으로 한정하거나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국가가 규명된 진상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안 제22조),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안 제23조),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안 제24조),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25조).

제4장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조치

제22조(피해자 명예회복) 국가는 규명된 진상에 따라 피해자와 그 유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보상금) ①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24조(의료지원금) ①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생활지원금) ① 피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탁금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23조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도록 하고 있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사망·행방불명, 상이 등 피해유형별로 보상금 산정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사망·행방불명, 후유장애, 수형의 경우를 구분하여 보상금의 기준과 상한을 규정하고 있음⁶⁾.

6)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보상금) ① 피해자중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 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2. 신체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월평균임금에 노동력상실률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장애등급·노동력상실률 및 단할인법에 의한 중간이자공제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6항 및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피해자중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한 것으로 보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보상금) 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희생자의 일실회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2. 후유장애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9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3. 수형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수형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을 지급한다.

가.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결정 연도 형사보상 1일 최고액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에 수형 또는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

이에 비추어 볼 때, 안 제23조는 산정기준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보상금의 기본적인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음. 피해의 유형·정도, 사망·행방불명·상이 여부, 후유장애의 정도 등 보상금 산정의 핵심 요소는 법률에 기본적인 기준을 두고, 세부적인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피해의 정도와 별도로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보상과 생활지원의 성격을 혼동할 우려가 있음.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 사이에 현재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보상금 액수가 달라질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생활형편을 고려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 제25조의 생활지원금 등 별도의 사회보장적 지원수단을 활용하고, 보상금은 피해의 정도를 중심으로 산정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안 제24조는 부산덕성원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법 시행 당시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하고, 그 경우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의료지원금 제도와 유사하게⁷⁾, 사건으로 인한 상이가 장기간 지속되는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② 후유장애자로 결정된 사람이 그 후유장애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7)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의료지원금) ①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

피해자에게 치료·간병 및 보장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안 제24조는 지급대상을 “부산덕성원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을 의미하는지 또는 별도의 의학적 판단만으로도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함. 보상·지원체계의 정합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피해자 결정과 의료지원금 지급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간병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보상금등의 지급절차 및 권리보호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와 위원회의 심의·결정, 결정서 송달 및 재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또한, 신청인이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안 제30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양도·담보 제공·압류를 금지하며, 조세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 및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4장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조치

제26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23조에 따른 보상금, 제24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제25조에 따른 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28조(결정서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심의) ①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제28조에 따른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27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30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28조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32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3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3.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과 관련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4조(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30조는 지급결정에 동의하는 신청인만이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동의절차는 신청인에게 결정금액의 수령 여부를 선택하게 하고, 지급에 관한 의사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 다만, 제정안은 동의의 법률상 효력, 즉 동의 후 동일한 피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하고 있지 않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⁸⁾, 제정안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 제정안이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금 지급으로 분쟁을 종결하려는 것인지에 관해 입법정책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2조는 보상금등에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상금등에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보상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두 법률 및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을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지방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⁹⁾, 조세 면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의 개정 필요 여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9)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7. 피해자 지원시설, 기부금품 및 기념사업 등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를 위하여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5조),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관 건립,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및 전시, 위령공원 조성 등의 기념사업을 수행하거나 법인·단체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37조). 또한, 누구든지 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고,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자 결정 및 보상금등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안 제38조).

제4장 피해자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조치

제35조(부산 덕성원 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위하여 부산 덕성원 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입소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념관 건립
2.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보존·관리 및 전시
3. 위령공원 조성

4. 그 밖에 기념 관련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불이익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와 그 유족은 위원회의 피해자 결정 및 보상금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36조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 접수 제한¹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임. 피해자 지원과 기념사업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피해자·유족 결정 및 보상금등 지급 결정을 담당하는 한시적 조직으로서, 기부금품을 지속적으로 접수·관리·집행하는 주체로 적절한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기탁금품의 접수 및 사용에는 회계처리, 수입·지출 관리, 사업 종료 후

1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잔여재산 처리 및 기부자에 대한 공개·보고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 후 해산 또는 기능 축소가 예정되어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유사 입법례를 보면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및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기탁금품의 접수 주체를 진상규명 위원회가 아닌 관련 재단으로 정하고 있음¹¹⁾. 이에 따라 제정안도 기념사업 및 피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별도 법인이나 재단을 설치하고 그 법인·재단이 기탁금품을 접수하도록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38조는 사건과 관련한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고,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자 결정 및 보상금등의 지급을 이유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 것임. 이는 진상규명 과정에서 피해자·참고인 등이 보복이나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여 진술을 주저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안 제38조제1항의 “자유롭게 발언” 및 “불이익”의 범위는 넓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안 제41조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불이익 처우는 사건 관

1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4·16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72조(기탁금품의 접수에 관한 특례) ① 제71조에 따른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련 진술·신청·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한 구체적 불이익 조치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¹²⁾.

12)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38조(증인등의 보호) ① 증인등은 청문회에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하여 법률상 권리에 관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변호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인등은 청문회에서 한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이 법에서 정한 처벌 외에 다른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8. 비밀준수의무 및 벌칙

가. 제정안의 내용

- 제정안은 위원회의 위원·직원·감정인 및 위원회의 위촉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안 제39조), 이를 위반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40조). 또한,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41조).

제5장 보칙
제3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칙
제40조(벌칙) 제39조를 위반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조사대상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진술을 거짓으로 한 참고인이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8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나. 검토의견

- 안 제41조제1항제5호는 사건 관련 발언이나 피해자·유족의 지위를 이유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임. 피해자·참고인 등이 보복 또는 차별을 우려하여 진술·신청을 주저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다만, 안 제38조의 불이익금지 규정은 적용범위가 넓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불이익 처우의 유형과 행위주체를 명확히 하여 제재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4